

3. 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8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)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교내장학금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근로장학금</p> <p>1) 학기근로장학금: (생략)</p> <p>2) 시간근로장학금: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<u>월 50 시간 이내의</u>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 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(이하생략)</p> <p>3) ~ 7) (생략)</p> <p>마. 기부장학금: (생략)</p> <p>바. 특별장학금: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악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 8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)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교내장학금</p> <p>가. ~ 다. (현행유지)</p> <p>라. 근로장학금</p> <p>1) 학기근로장학금: (현행유지)</p> <p>2) 시간근로장학금: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<u>월 50 시간 내외의</u>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 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(이하 현행유지)</p> <p>3) ~ 7) (현행유지)</p> <p>마. 기부장학금: (현행유지)</p> <p>바. 특별장학금: <u>장애학생, 학생활동 봉사 학생 및</u>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악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기 승인사항 반영</p> <p>- 현재 1인 근로시간이 50시간이 초과함에 따라 시간근로장학금을 50시간 내외로 운영하도록 변경 (학생지원팀-172)</p> <p>- 이미 특별장학금 선발시 장애여부를 우대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(학생지원팀-879)</p> <p>- 학생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간부장학금 제도를 운영중임(학생지원팀-582)</p>